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74호
----------	---------

제출년월일 2025. 9. 3.
제 출 자 오강현 의원

1. 제안이유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 근거가 되는 조례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근거 조례명 조문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고

- 나. 조례안 예고기간 : 2025. 9. . ~ 2025. 9. .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부서협의 : 해당없음

- 2) 관련부서 : 해당없음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그 밖의 시·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김포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19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68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5명

부칙 <조례 제2096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 상향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8항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 2022. 1.13.]
 (제정) 1998.04.01 조례 제6호
 (전부개정) 1998.10.13 조례 제173호
 (전부개정) 2001.04.06 조례 제318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693호
 (일부개정) 2014.08.04 조례 제1130호
 (일부개정) 2014.08.04 조례 제1130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88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조 제목 개정 2014.8.4)

- ①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
- ② 사무국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8.4) <2021.12.31.>

제3조 (사무국장) (개정 2014.8.4)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4.8.4)
-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8.4)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4.8.4)

-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중건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4)
[제5조에서 이동<2021.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4) [제6조에서 이동<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2008. 1. 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4 조례 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의회사무과”를“의회사무국”으로 한다.

「김포시의회 포상조례」 제11조제1호 중 “의회사무과장”을“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김포시의회 공인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중 “의회사무과장”을“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 중“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제2항 중“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88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